

내압용기의 각인 및 표시방법(제57조의15관련)

1. 합격표시 등

내압용기재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각인할 것. 다만, 각인하기가 곤란한 내압용기의 경우에는 다목과 같은 합격표의 부착으로 각인을 갈음할 수 있다.

가. 내압용기재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약호

나. 내압용기재검사의 연월

다. 내압용기재검사 합격표

내압용기재검사 합격표			
자동차등록번호			합격인
재검사 연월일			
유효기간 만료일			
충전가스명			
최 고 충 전 압 력 (MPa)		개 수	
번호	용기의 번호	부속품의 기호와 번호	
1			
2			
3			
4			
5			
6			
7			
8			
9			
10			

← 80 →

↑ 80 ↓

※ 비고

1. 재질은 금속박판 또는 특수인쇄용지로 한다.
2. 글자의 표기는 3년 이상 잘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인쇄한다.
3. 합격인은 직경 15mm인 원형인 “합” 자 표시를 한다.
4. 유효기간 만료일은 해당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내압용기 중 가장 짧은 기간을 말한다.
5. 최고충전압력은 해당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내압용기 중 가장 낮은 압력을 말한다.
6. 합격표는 연료충전구 덮개 안쪽에 붙여야 한다. 다만, 이것이 곤란한 경우 충전구가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.